

액화수소 생산 · 운송 및 충전소 구축 · 운영

린데수소에너지(주)

1. 규제특례 내용

액화수소 생산 · 저장 · 운송 · 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소단계 실증

-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,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- 구역 : (플랜트)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 효성화학 용연 공장 내
(충전소) 산업부 등과 협의한 전국 21개 지역
- 기간 : 2년
- 규모 : 플랜트 1기, 탱크로리 20대, 충전소 21기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1.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
2. 액화수소 충전소 21기의 구축은 허용하나, 실제 운영 규모 및 기간은 산업부와 신청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보험명 :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
- 보상한도 :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, 대물 1사고당 10억원

5. 기타 장관이 제 품 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공통조건 :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 ·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- 공통사항 : 사업자가 실증특례 · 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